

제51권: 2008. 10. 22.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 명 근

1. 미국 농업법의 입법 과정과 절차	1
2. 미국의 농업 정책 개요	2
3. ‘2008년 농업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6
4. 미국 ‘2008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02-3299-4364 myongeor@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농업법의 입법 과정과 절차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이 지난 6월 18일 확정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농업법인 ‘농업조정법(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이 1933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하원의 재의결로 번복(override)되는 진통을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농업정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농업법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통상 5년간 유효한 농업법에 의해 규정되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참여 하에 의회가 입법을 주도한다. 하지만 농민과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기업, 소비자 및 환경단체, 농촌사회지도자, 납세자 단체 등 관계 당사자들도 공개된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따라서 의회는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하게 된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까지 유효하며 행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농업법에 어떤 정책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

특히 농무부(USDA)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48개주에서 52회에 걸친 전국 순회 현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4,000여건의 국민제안을 수렴하여 농업보조금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농업법 제안서를 2007년 1월 의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농업법’이 2007년 9월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DDA 협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의회는 농무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2007년 7월 하원안과 같은 해 12월 상원안을 각각 의회에 제시하였으며, 이후 2008년 4월 상하원 합동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합동안은 행정부 안과 달리 오히려 농업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1 USDA ERS 『Briefing Rooms』 “Farm and Commodity Policy: Basics of U.S. Agricultural Policy,” March 17, 2008.

2. 미국의 농업 정책 개요

미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농업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 농업부문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 정책은 크게 품목별 정책(commodity policies)과 환경계획(agri-environmental program), 식품지원계획(food assistance program), 그리고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rogram)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2.1. 품목별 지원 정책

미국 농정의 품목별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격지지와 소득지지 정책으로 주로 곡물과 유지작물, 섬유작물, 낙농품, 그리고 설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정책의 상대적인 비중은 시기별로 달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85년 농업법’ 이래 품목별 정책은 시장 중심적 기조로 전환되어 농민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확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가격지지는 줄어들고, 농민의 생산 자율성과 소득지지가 확대되었다.

소득지지 정책은 정부가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불하여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소득지지 정책에는 특정 품목의 과거 생산에 기초하여 지불하는 고정직불(Direct Payments; DP)과 경기변동대응직불(Counter-Cyclical Payments; CCP), 낙농가에 대한 지원인 우유소득손실보상(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그리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재 생산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2 USDA ERS 『Briefing Rooms』 “Farm and Commodity Policy: Basics of U.S. Agricultural Policy,” March 17, 2008.

Loans; MAL)와 융자차액지불(Loan Defficiency Payments; LDP)이 포함된다.

과거 생산에 기초한 보조금 지불은 ‘1996년 농업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시장과 무역왜곡 효과가 있는 종전의 차액지불제를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생산제한 하의 허용보조’인 ‘Blue Box’에 따른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형식상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는 LDP 제도는 많은 농가가 유통지원 융자 대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을 받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지지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 농정에서 가격지지 정책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지만 낙농과 설탕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낙농품 가격지지는 우유구매지지계획(Milk Support Purchase Program)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버터와 체더치즈, 탈지분유를 구매지지가격에 구입한다.³ 설탕가격지지(Sugar Price Support) 정책은 관세할당량(TRQ) 제도와 국내유통량할당(Domestic Marketing Allotment; DMA) 제도, 그리고 가격지지융자(Price Support Loan)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TRQ 제도는 수입을 일정한 물량으로 제한하여 국내 가격을 지지가격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DMA 제도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량을 사탕무우 가공업체와 사탕수수 생산자들에게 할당함으로써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가격지지융자 제도는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이하로 떨어지면 현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격지지 제도이다. 설탕에 대한 가격지지융자는 다른 품목의 융자와 달리 생산자가 아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융자한다. 설탕은 저장되기 전에 가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공업체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최소지불액(minimum payments)을 지급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3 구매지지가격은 유가공업체가 원유를 낙농가로부터 우유지지가격인 100파운드당 9.9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2.2. 환경정책

미국은 지난 70여년간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보전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정책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토양 유실 이외의 새로운 문제, 즉 물과 공기의 질적 향상과 수자원 확보, 이산화탄소 감축,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보전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농업 환경정책은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환경개선허가계획(Environment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보전안보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이 새로 제정되었다.

CRP는 유실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농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10년 내지 15년간 휴경하는 제도이다. 농민은 휴경의 댓가로 보조금을 받아 영년생 지력보호 작물 재배와 특정한 보전조치 비용에 충당한다. EQIP는 영농 중인 농지에 가축이나 작물 재배자가 토양이나 물, 또는 관련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QIP에 가입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장려금과 비용 분담을 받을 수 있다.

CSP는 보전 성과가 우수한 농민에게 포상금을 지불하고 영농 중인 농지에 보전조치를 이행 및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보전대상 자원과 조치 선정 등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CSP에 가입하면 기존 보전 노력의 수준에 대한 관리 수당과 보전계획에 지정된 추가적인 보전조치 이행에 대한 강화 수당을 받는다.

2.3. 식품지원정책

미국 농무부의 식품지원정책은 식품구입권계획(Food Stamp Program)과 여성, 영아, 소아에 대한 영양보조계획(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그리고 소아영양계획(Children Nutrition Program)의 세가지 핵심

사업으로 구성된다. 식품구입권계획은 미국 최대의 저소득층 영양지원 정책인 동시에 미국 농업생산물과 식품의 주요 소비처이다. 이 계획은 매월 수혜자들이 인가된 점포에서 허용된 품목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월평균 수혜자는 2,500만명 이상이다.

WIC은 저소득 여성과 영아, 그리고 영양 부족 위험이 있는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영양 식품과 영양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 그리고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계획은 미국에서 출생하는 전체 영아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여 매월 약 800만명 이상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아영양계획은 주로 저소득층 소아와 노인에 대한 식품지원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학교점심계획(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학교 아침계획(School Breakfast Program), 소아성인지원식품계획(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그리고 여름식품계획(Summer Food Service Program)이 농무부 식품지원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2.4.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은 1930년대 이래 주택, 전기, 통신, 교육, 교통, 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목표가 농촌지역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과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농업은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핵심산업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점차 농촌지역에서 비농업 부문의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요 농촌개발정책은 일반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기업체 지원, 그리고 주택 지원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의 농촌개발정책 담당 부서가 농무부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큰 것은 농무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다. 농무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촌용역국(Rural Utility Service)의 기반시설계획(Infrastructure Program), 농촌기업협력국(Rural Business Cooperation Service)의 기업계획(Business Program), 그리고 농촌주택국(Rural Housing Service)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계획(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다.

3. ‘2008년 농업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008년 농업법’의 정식 명칭은 ‘2008년 식품·보존·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며 공법 110-234(P.L. 110-234), 의회 의결번호 6124(H.R. 6124)이다. 이 법은 2012년까지 5년간 연방정부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명칭에는 농업이나 농촌을 의미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과 환경보존, 에너지만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은 모두 15개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골격은 ‘1996년 농업법’에 비해 농업보호를 강화한 ‘2002년 농업법’과 유사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⁴. 여기서는 모든 농업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품목별 계획(Commodity Programs)을 비롯하여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에 포함된 환경보존(Conservation), 식품과 영양(Food), 그리고 에너지(Energy)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3.1. 품목별 계획(Commodity Programs)

‘2008년 농업법’은 고정직불(Direct Payments; DP)과 경기변동대응직불(Counter-Cyclical Payments; CCP) 및 유통지원용자(Marketing Assistance

4 USDA ERS. 「2008 Farm Bill Side-By-Side」 “2008 Farm Bill Overview” August 20, 2008.

Loan; MAL)의 지불 상한과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의 목표가격과 최저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거 농업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입보전직접지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설탕에 대한 용자단가를 인상하였으며 공급 과잉된 설탕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낙농품 가격지지 방식을 원유 대신 유가공품의 지지가격에 연동되도록 변경하였다.

3.1.1. 고정 지불(DP)

DP는 과거 일정 시점에 정책 대상품목을 생산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6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정책 대상품목에 대한 지불액(payment amount)은 지불면적(payment acres)에 지불단수(payment yields)와 지불단가(payment rate)를 곱한 금액이다. ‘2008년 농업법’의 DP 대상 품목은 ‘2002년 농업법’의 규정과 동일한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옥지면화, 쌀, 대두, 기타 유지종자와 땅콩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불면적이 기준면적(base acres)의 83.3%로 종전의 85%보다 줄어들었다. 지불단수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한 ‘2002년 농업법’에 규정된 단수이며 지불단가도 ‘2002년 농업법’의 단가로 고정되어 있다(표 1). 따라서 연간 지불액은 약 50억 달러로 거의 일정하다.

$$\begin{aligned}\text{지불액} &= \text{지불면적} \times \text{지불단수} \times \text{지불단가} \\ &= \text{기준면적의 } 85\% (2009\sim 2011\text{년은 } 83.3\%) \times \text{지불단수} \times \text{지불단가}\end{aligned}$$

DP를 받는 농민에게는 사실상 완전한 경작자율성이 부여된다. 보조금이 현재의 시장가격이나 농가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농가의 생산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생산중립적(decoupled) 보조로 볼 수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불액의 22% 이내에서 선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 2008년 농업법 고정직불(DP) 품목별 지불단가

품목	단위	지불단가	품목	단위	지불단가
밀	\$/부셸	0.52	육지 면화	\$/파운드	0.0667
옥수수	\$/부셸	0.28	쌀	\$/cwt	2.35
수수	\$/부셸	0.35	대두	\$/부셸	0.44
보리	\$/부셸	0.24	기타 유지종자	\$/cwt	0.8
귀리	\$/부셸	0.024	땅콩	\$/톤	36

주: cwt는 100파운드

자료: The Library of Congress(Thomas). HR2419(USFarmBill2008) 및 최정섭 외(2002). 105쪽.

3.1.2. 경기변동대응직불(CCP)

CCP는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에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과거의 단수와 경작면적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현재 그 품목을 경작하지 않는 농가도 보조금 수혜자격이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대상품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는 일종의 최저가격 보장 제도이므로 현재의 시장조건과 무관하게 지불되는 DP와 달리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CCP 지불액은 지불면적과 지불단수, 그리고 지불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2008년 농업법’은 대상품목에 채두류(pulses)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나 지불면적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기준면적의 83.3%로 소폭 축소하였다. 2008년과 2012년은 종전과 같이 85%이며 지불단수도 ‘2002년 농업법’의 단수와 동일하다. 추가된 채두류의 단수는 1998~2001년 농장 평균단수에 전국 평균단수의 1981~1985년 대비 1998~2001년 변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불단가는 목표가격에서 유효가격을 뺀 값이다. 유효가격은 해당 품목의 12개월 전국평균시장가격(national average market price; NAMP)과 전국평균 유통지원융자단가(marketing loan rate) 가운데 높은 금액에 DP를 합한 가격이다. 다만 쌀의 경우 품종 또는 등급(type or class)별 가격과 융자단가 및 직불액을 적용한다.

목표가격은 2009년까지 ‘2002년 농업법’과 동일하며 쌀을 장립종과 중립종으로 세분하였으나 목표가격은 같다. 2009년에는 채두류 4개 품목(건조 완두, 렌즈콩, 이집트 콩 2종)의 목표가격이 새로 설정되었다. 또한 밀과 수수, 보리, 귀리, 대두, 유지종자의 목표가격은 2010년부터 인상된 반면 육지면화(upland cotton)의 목표가격은 소폭 인하된다(표 2). 지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begin{aligned} \text{지불액} &= \text{지불면적} \times \text{지불단수} \times \text{지불단가} \\ &= \text{기준면적의 } 85\%(\text{2009~2011년은 } 83.3\%) \times \text{지불단수} \times (\text{목표가격} - \text{유효가격}) \end{aligned}$$

표 2. 정책 대상품목별 목표가격

품목	단위	2008년	2009년	2010~2012년	2002년 농업법
밀	\$/부셸	3.92	3.92	4.17	3.92
옥수수	\$/부셸	2.63	2.63	2.63	2.63
수수	\$/부셸	2.57	2.57	2.63	2.57
보리	\$/부셸	2.24	2.24	2.63	2.24
귀리	\$/부셸	1.44	1.44	1.79	1.44
육지면화	\$/파운드	0.7125	0.7125	0.7125	0.724
쌀	\$/cwt	10.5	10.5	10.5	10.5
대두	\$/부셸	5.80	5.80	6.0	5.8
기타 유지종자	\$/cwt	10.1	10.1	12.68	10.1
건조 완두	\$/cwt	-	8.32	8.32	-
렌즈콩	\$/cwt	-	12.81	12.81	-
이집트콩(소)	\$/cwt	-	10.36	10.36	-
이집트콩(대)	\$/cwt	-	12.81	12.81	-
땅콩	\$/톤	495	495	495	495

주: cwt는 100파운드

자료: The Library of Congress(Thomas). HR2419(USFarmBill2008) 및 최정섭 외(2002). 105~106쪽.

3.1.3. 수입보전직접지불(ACRE)

ACRE 제도는 ‘2008년 농업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종전의 CCP 제도 하에서는 흉작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도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조금

을 받지 못하는 반면, 풍작으로 소득이 늘어도 가격 하락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시정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가격 기준 CCP 대신 수입액 기준 보조금인 ACRE를 농가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농가는 일단 ACRE를 선택하면 2012년까지 번복이 불가능하며 DP의 20%와 유통지원융자의 30%가 삭감되는 조건으로 직불액을 받게 된다. 농가의 ACRE 대상품목 경작 면적이 기준면적(base acreage)을 초과할 경우 농가는 어떤 경작지가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농무부 장관은 ACRE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생산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생산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한, 그리고 농무부 장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모든 농가가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모든 농가는 CCP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땅콩을 포함한 정책 대상품목의 주별 실제수입(actual State revenue; ASR)이 ACRE의 목표수입(ACRE program guarantee; APG)보다 적고, 이들 품목의 실제 농가수입(actual farm revenue; AFR)이 ACRE의 농가목표수입(farm ACRE benchmark revenue; FABR)보다 적을 때 ACRE 직불금을 받게 된다.

주별 실제수입(ASR)은 주별 실제단수(ASY)와 전국평균시장가격(NAMP)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ACRE 보조금은 흉작으로 수확이 감소하거나 또는 풍작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농가수입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된다. ASY는 주 전체의 해당 품목 생산량을 경작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NAMP는 전국의 12개월 평균 가격과 유통지원융자단가(marketing loan rate)의 70% 가운데 높은 가격이다.

ACRE의 목표수입은 주별 목표단수(benchmark State yield; BSY)와 ACRE 목표가격(ACRE program guarantee price; APGP)을 곱한 값의 90%에 해당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 품목별 ACRE 목표수입은

전년 대비 10%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주별 목표단수는 전국농업통계국(NASS) 자료로 산출한 해당 주의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 단수가 된다. 다만 BSY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대표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농무부 장관은 과거 5년 평균 단수 등을 기초로 할당한다. ACRE 목표가격은 해당 품목 전국 시장가격의 최근 2년간 단순 평균치이다.

실제 농가수입(AFR)은 해당 농가의 실제 단수와 NAMP를 곱한 값이다. FABR은 최근 5년간 해당 농가의 올림픽 평균 단수(AY)와 APGP를 곱한 값에 생산자가 지불할 에이커당 작물보험료(per acre crop insurance premium)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정책 대상품목 생산자에 대한 평균작물수입선택 지불액은 ① ACRE 목표수입(APG)과 주별 실제수입(ASR)의 차액과 APG의 25% 가운데 작은 금액에 ② 경작면적의 83.3%(2012년은 85%)와 ③ 해당 농가의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 단수(AY)를 주별목표단수(BSY)로 나누어 얻은 계수(quotient)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2009~2011년: ACRE 직불액 = $\min\{(APG-ASR), 0.25APG\} \times 0.833AP \times (AY/BSY)$
- 2) 2012년: ACRE 직불액 = $\min\{(APG-ASR), 0.25APG\} \times 0.85AP \times (AY/BSY)$

3.1.4. 경작자유성(Planting Flexibility)

경작자유성은 미국 농정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되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경작 금지 품목에 과일과 채소 외에 야생쌀(wild rice)까지 포함시켰다. ‘2008년 농업법’은 이러한 금지 품목을 경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즉, 금지 품목인 과일과 채소, 야생쌀도 과거 2모작으로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 2모작을 허용하며, 과거 해당 농가에서 기준면적에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대한 DP와 CCP 지불액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경작을 허용한다. 또한 생산자가 과거 이들 품목을 경작한 기록

을 제시할 경우 경작면적이 1991~1995년 평균 또는 1998~2001년 평균 경작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그 면적에 대한 DP와 CCP 지불액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경작을 허용한다.

‘2008년 농업법’은 농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이, 녹두, 리마콩, 호박, snab bean, 단옥수수, 토마토를 기준면적에 경작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별 시범사업 면적은 아이오와 1,000에이커, 오하이오 4,000에이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컨신이 각각 9,000에이커, 미네소타 34,000에이커 등이다.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신선 과일과 채소 및 가공과일과 채소의 가격과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하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농업, 영양, 산림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유통지원융자(MAL)

MAL은 농민이 농산물을 담보로 9개월간 정부가 정한 융자단가에 따라 상환의무면제융자(nonrecourse loan)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민이 수확기에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상환의무면제융자는 시장가격이 융자단가와 이자를 합한 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담보 품목으로 상환하게 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농민이 포기한 물량을 가격이 오를때까지 시장에 출하하지 않으므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8년 농업법’은 MAL 제도를 유지하면서 융자상한을 농장의 대상품목 생산량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집트콩(대)을 대상품목에 추가하였으며 쌀은 장립종과 중립종으로 구분하였지만 융자단가(loan rate)는 동일하다. 밀과 보리, 귀리, 유지종자, 등급품 양모와 벌꿀에 대한 융자단가는 2010년부터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최저가격을 인상하였다. 반면 건조완두와 렌즈콩은 2009년부터 CCP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융자단가를 인하하였다(표 3).

MAL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기간 동안 1985년 농업법의 보전의무(conservation

requirements) 조항과 습지보호의무(wetland protection requirements)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MAL 기간은 용자가 이루어진 다음 달 1일부터 9개월이며 어떤 품목이건 용자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면화와 쌀, 설탕과자류, 해바라기씨 등을 제외한 품목의 MAL 상환단가(repayment rate)는 ① 용자단가에 이자를 합한 금액, ② 최근 30일간 평균 시장가격 및 유통용자수익(marketing loan benefits)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격에 의해 장관이 산출한 단가, ③ 농무부 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한 금액 가운데 작은 것으로 한다.

육지면화와 쌀에 대한 용자금의 상환단가는 ① 용자단가에 이자를 합한 금액과 ②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제시장가격 가운데 작은 것이 된다. 쌀과 육지면화의 국제시장가격은 미국산의 품질과 지역(quality and location)을 고려하여 조정된 세계시장가격(Adjusted world market price)이다. ELS 면화에 대한 유통지원 용자의 상환단가는 용자단가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3.1.6. 용자차액지불(LDP)

LDP는 MAL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MAL 용자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MAL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용자 대신 차익을 지불하도록 '1996년 농업법'에 도입하였다. LDP 대상 품목은 MAL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이나 ELS 면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2년 농업법'은 대상 품목에 모피(unshorn pelts)와 건초(hay) 및 사일리지(silage)를 포함시켰다.

LDP 지불액은 지불단가(payment rate)에 해당 품목의 생산량에서 MAL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 수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지불단가는 대상 품목별 용자단가(loan rate)와 상환단가(loan repayment rate)의 차액이다. 밀, 보리, 귀리 및 라이밀(triticale)을 경작하던 농지를 방목지로 사용할 경우에 지불하는 LDP는 '2002년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2008년 농

업법'은 농무부 장관이 용자금 상환단가를 용자대상 품목의 최근 30일간 평균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품목별 용자단가

품목	단위	2008년 농업법			2002년 농업법 (2004~2007년)
		2008년	2009년	2010~2012년	
밀	\$/부셸	2.75	2.75	2.94	2.75
옥수수	\$/부셸	1.95	1.95	1.95	1.95
수수	\$/부셸	1.95	1.95	1.95	1.95
보리	\$/부셸	1.85	1.85	1.95	1.85
귀리	\$/부셸	1.33	1.33	1.39	1.33
육지면화	\$/파운드	0.52	0.52	0.52	0.52
ELS면화	\$/파운드	0.7977	0.7977	0.7977	0.7977
쌀	\$/cwt	6.5	6.5	6.5	6.5
대두	\$/부셸	5.0	5.0	5.0	5.0
기타 유지종자	\$/cwt	9.3	9.3	10.09	9.3
건조 완두	\$/cwt	6.22	5.40	5.40	6.22
렌즈콩	\$/cwt	11.72	11.28	11.28	11.72
이집트콩(소)	\$/cwt	7.43	7.43	7.43	7.43
이집트콩(대)	\$/cwt	-	11.28	11.28	-
등급품 양모	\$/파운드	1.0	1.0	1.15	1.0
등외품 양모	\$/파운드	0.4	0.4	0.4	0.4
앙골라털	\$/파운드	4.2	4.2	4.2	4.2
꿀	\$/파운드	0.6	0.6	0.69	0.6
땅콩	\$/톤	355.0	355.0	355.0	355.0

주: cwt는 100파운드

자료: The Library of Congress(Thomas). HR2419(USFarmBill2008) 및 최정섭 외(2002). 107~108쪽.

3.1.7. 설탕(Sugar)

‘2008년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설탕정책인 156조(Section 156)를 수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 기간에 생산되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우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산 사탕수수 가공업체에 지원되는 용자단가는 2011년까지 매년 파운드당 0.25센트씩 인상된다. 따라서 2008년에는 ‘2002년 농업법’과 같은 18센트에서 2009년 18.25센트, 2010년 18.5센트, 2011년과

2012년 18.75센트가 된다.

2008년 국내산 사탕무우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단가는 종전과 같은 정제 사탕무우 파운드당 22.9센트를 유지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융자단가는 사탕수수 융자단가의 128.5%로 한다. 따라서 2009년 23.5센트, 2010년 23.8센트, 2011년과 2012년 24.1센트가 된다.

융자시점은 회계연도 시작 이후이며 만기는 융자 시행 다음 달로부터 9개월째의 마지막 날과 융자 시행 회계 연도 마지막 날 가운데 빠른 시점이 된다. 한편 최초 융자가 회계 연도 마지막 3개월 동안 시행되었을 경우 가공업자는 설당을 보조융자(supplemental loans)를 받기 위한 재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2차 융자 단가는 최초융자와 같아야 하며 9개월에서 최초융자 기간을 차감한 시점에 만기가 된다.

융자형태(loan type)는 상환의무면제융자(nonrecourse loan)이다. 또한 융자를 받는 가공업자는 사탕무우 및 사탕수수 생산자에게 융자액의 일부를 담보 가치에 비례하여 지불한다는 가공업자 보증서(processor assurances)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탕무우의 경우 최소지불액(minimum payments)은 생산자와 가공업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지불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농무부 장관은 가공업자가 융자 만기 시점에 담보물 포기를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국내산 사탕수수와 사탕무우로 반가공 설당(In-process Sugar)을 가공하는 업자에 대한 융자 역시 상환의무면제융자이며 융자단가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우 정제당에 대한 단가의 80%로 책정한다. 가공업자는 융자에 대한 담보물인 반가공 설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탕수수 조당(raw cane sugar)이나 사탕무우 정제당(refined beet sugar)으로 교환하여 상품신용공사(CCC)에 이양(transfer)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무부 장관은 가공업자에게 사탕수수 조당 또는 사탕무우 정제당과 반가공 설당 간의 융자단가 차액에 이양 물량을 곱한 금액을 지불한다. 반가공 설당에 대한 융자기간도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08년 농업법’은 설탕 재고 및 생산량 감축이 필요할 경우 이미 재배되고 있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는 바이오에너지 공급 재료 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1.8. 낙농품(Dairy)

연방정부의 3개 주요 낙농품 보조 정책인 우유가격지지(Milk Price Support), 연방우유유통명령(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FMMO) 및 우유소득손실보상(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제도가 존속된다. 먼저 11개의 기존 FMM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농무부 장관은 ‘2008년 농업법’ 발효 60일 이내에 유통명령 변경 지침과 일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14인으로 구성된 FMMO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연방 및 주별 유통명령 전반에 대해 검토·평가하고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장관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유가격지지는 과거 지방 3.67% 함유 우유 기준 100파운드당 9.9 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농업법에서 정부는 우유가 함유된 유가공품인 버터, 탈지분유, 치즈를 특정 가격에 구매하도록 변경하였다. 최저 구매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한다;

- 체다치즈(덩어리): 1.13 달러/파운드
- 체다치즈(깡통 포장): 1.10 달러/파운드
- 버터: 1.05 달러/파운드
- 탈지분유: 0.80 달러/파운드

MILC 제도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되 목표가격인 100파운드당 16.94 달러와 보스턴 유통명령의 1등급 가격 간의 차액에 대한 지불액 비율을 3기간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였다. 먼저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차액의 34%, 2012년 8월 31일까지는 차액의 45%, 그리고 2012년 9월 1일 이후에는 다시 34%를 지불한다. 또한 각 기간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의 상한은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연간 240만 파운드, 201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298만 5천 파운드, 그리고 2012년 9월 1일 이후에는 연간 240만 파운드로 책정하였다.

CCC로 하여금 미국산 낙농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낙농수출유인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은 ‘2008년 농업법’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다자간 통상협상(DDA)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허용된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낙농자조금(checkoffs)을 예산으로 하는 전국낙농진흥연구계획(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Program; NDPRP)과 전국우유가공진흥계획(National Fluid Milk Processor Promotion Program; NFMPPP)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100파운드당 0.15 달러의 낙농품 수입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0.075 달러로 인하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3.1.9. 행정사항(Administration)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UR에서 허용한 보조 191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02년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이 2012년 9월 말 만료될 경우 대체 입법이 없으면 기본법인 ‘1938년 농업조정법’과 ‘1949년 농업법’이 효력을 회복한다.

기존 법에서 75,000 달러로 제한하였던 유통융자수익(marketing loan benefits)과 LDP의 한도는 철폐하였다. 그러나 직접지불액의 한도는 일인당 40,000 달러로 유지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ACRE를 선택할 경우 그 한도는 20% 줄어든 32,000 달러가 된다. CCP의 한도도 일인당 65,000 달러로 동일하다. 그러나 ACRE 참여자의 경우 ACRE와 CCP 보조금의 전체 한도는 65,000 달러에 DP 한도 축소분 8,000 달러를 합한 73,000 달러가 된다. 땅콩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현행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금 한도와 관계없이 DP 40,000 달러, CCP 65,000 달러가 유지된다. 단, 기본 경작면적이 10에이커 이하인 경작자는 사회적 조건 불리농가 및 자원 제약 농가를 제외하고는 DP나 CCP 직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은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농업생산 요소 또는 농업경영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부부 농가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적극 활동할 경우

배우자 또한 적극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수혜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이전 농업법에서는 농업경영체 3개를 소유한 개인의 보조금 및 유통융자 수혜 한도가 단일 농장에 대한 한도의 2배로 제한하는 ‘3-경영체 규정(3-entity rule)’이 적용되었으나 ‘2008년 농업법’은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간접적 소유권에 따라 분배되도록 개정하였다.

보조금 수혜자격 농업소득 한도를 종전의 연간 2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었다. 따라서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부부 합산 농업소득이 15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 보조금 수혜자격을 갖는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의 비농업소득이 연간 50만 달러를 넘을 경우 DP, CCP, ACRE, MAL, LDP는 물론 무보험 작물보조와 우유손실보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3.2. 환경보존(Conservation)

환경보존(Conservation)은 ‘2008년 농업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개선장려계획(EQIP) 예산을 증액하여 경작농지의 보존과 친환경적 영농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전의 보존안전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을 보존관리계획(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으로 수정하여 농지 보호를 강화하였다. 습지유보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과 농지보존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 및 초지유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등에 의해 습지를 보호하고 활용 농지를 보전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2.1. 준수규정(Compliance Mechanisms)

유실가능성이 높은 농지보존(Sodbuster) 및 습지보존(Swampbuster)을 위한 생산자의 적절한 보존 조치 규정과 감시 권한의 민간 위임 불가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장관이 ‘생산자가 선의로, 법규 위반 의도없이(in good faith and without intent to violate the law)’ 행동했다고 결정할 경우

원상 복구 기간을 1년까지 허용하는 종전의 규정은 유지하되 ‘선의와 법규위반 의도’에 대해서는 농무부 농업국(FSA)과 지역환경보존국(NRCS)의 검토와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3.2.2. 보존유보 및 습지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and Wetland Reserve Program)

보존유보계획(CRP)은 매년 대상 농지에 풀이나 나무 등 장기적인 보존조치를 취하는 농민에게 임차료와 비용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CRP 계약 기간은 최소 10년, 최대 15년이다. ‘2008년 농업법’은 CRP 계획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지만 대상 면적 상한은 3,920만 에이커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3,200만 에이커로 축소하였다. 또한 CRP의 목표를 ‘주, 지역 및 국가 보존 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계획 참여 토지의 자격조건을 ‘2008년 이전의 6년 가운데 4년간 경작’으로 수정하고 알팔파와 기타 다년생 풀 및 콩과 식물(legume)을 윤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참여 자격 기준에 지역우대기준(local preference criterion)을 추가하여 대상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CRP 참여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존 조치를 제시할 경우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to maximum extent practicable)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농업법에서는 CRP 대상 토지에 방풍림이나 야생동물 통로 개설을 목적으로 나무를 간벌할 경우 비용분담금(cost-share payments)을 지원하기로 허용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은퇴농이나 신규농 또는 사회적 조건불리 농축산인이 제공한 CRP 토지는 계약 종료 1년전부터 토질을 개량하여 유기농 인증절차에 착수토록 허용하는 등 특별 취급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 예산 2,500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주와 연방정부 간 합동 사업인 보존유보강화계획(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은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중요한 농업 관련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2008년 4월 현재 31개 주에 110만 에이커가 CREP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8년 농업법’도 CREP를 유지한다.

습지유보계획(WRP)은 습지에 야생동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농무부 장관은 농지에 습지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생산자로부터 장기 또는 영구적 사용권을 구입하거나 비용분담금을 지불한다. 사용권 구입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장관이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시불을 허용하지 않는 한 5년 이상 30년까지 분할 지급한다. 금액이 50만 달러 이내일 경우 1년에서 30년까지 분할 지급한다. WRP 상한 면적은 종전의 227만 5천 에이커에서 2012년까지 304만 1천 에이커로 확대하였다.

3.2.3. 영농토지계획(Working Land Programs)

영농토지계획(WLP)은 이미 시행 중인 환경개선장려계획(EQIP)과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WHIP) 외에 보존관리계획(CSP)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정책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과 기술을 지원한다.

먼저 EQIP는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들의 농지 환경 개선과 보존 조치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비용분담, 그리고 장려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2008년 농업법’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농업생산, 산림관리 및 환경개선의 동시 달성’으로 수정하였으며, EQIP 예산을 2002~2007년 49억 2천만 달러에서 2008~2012년 73억 2,500만 달러로 인상하였다. 또한 신규 참여농과 사회적 조건불리 농민에게 각각 전체 예산의 5%씩을 배정하는 보존접근(conservation access)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기농 생산 및 전환과 관련된 보존 조치는 EQIP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인당 보조금 한도는 연간 20,000달러, 6년간 80,000달러로 제한하였다. 비용분담금 한도를 종전의 50%에서 75%로 인상하는 동시에 보존 조치로 인해 소멸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신규농과 사회적 조건불리 농민의 경우 일반 농가에 비해 25% 추가 보상하되 그 한도는 전체 비용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EQIP 지급액 상한은 현행 연간 450,000달러에서 300,000달러로 인하하였으며 특별히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경우에는 450,0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존혁신포상금(Conservation Innovation Grants) 제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기 정화를 위해 혁신적 기술이나 비용 효율적 방식을 활용하는 생산자 및 산림 관리와 특작 생산자의 보존 조치도 포함시켰다. 또한 연방 정부의 분담금 한도 50%를 철폐하였으며, 연간 EQIP 예산에서 3,750만 달러를 대기 정화용으로 책정하였다.

WHIP는 야생동물 서식지 개설 또는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이다. 이번 농업법은 CCC의 재원을 2002-2007년 총액 2억 1,300만 달러에서 2012년까지 매년 8,500만 달러(5년 총액 4억 2,500만 달러)로 증액하였으며 지역형평(Regional Equity) 규정을 존속시켰다. 중점서식지 장기 계약 시 정부의 비용분담 상한을 2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과거 규정이 없던 개인에 대한 지급액 상한을 5만 달러로 신규 책정하였다.

CSP는 토지나 물, 야생동물 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보전안보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참여 계약은 2017년까지 유효하다.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77만 에이커이며 평균 비용은 기술 지원 등 다른 지출을 포함하여 에이커당 연간 18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이 계획은 보존접근(conservation access) 조항에 따라 신규농과 사회적 조건불리 농민에게 각각 전체 면적의 5%씩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사유 경작지와 초지가 참여 대상이지만 2008년 이전 6년간 4년 이상 작물을 경작하거나 CRP, WRP, 초지보존계획(GRP)에 참여하는 토지는 참여 자격이 없다.

그 밖에 영농토지계획(WLP)의 일환으로 보존 조치에 대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하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과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초지보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등으로 이루어진 농지보존계획(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rograms)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계획(Watershed Program)도 여러 가지 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3.3. 영양(Nutrition)

식품과 영양(Nutrition) 분야에서는 종전의 대표적인 영양 지원 정책인 식품구입권계획(FSP)의 명칭을 2009년부터 보조영양지원제도(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로 변경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소 표준 공제액을 134달러에서 144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010년 이후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최소 지원액을 종전의 10달러에서 1인 가구 최대 지원액의 8%로 수정하였으며 육아비 부담 가구에 대한 공제비 한도를 철폐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긴급식품지원계획(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대하였다. 우선 2008년에는 1억 9,000만 달러로 증액하고 2009년 2억 5,000만 달러,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신선과일채소구매분배(Purchase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for Distribution) 정책은 국내 영양지원을 위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8년 1억 9,000만 달러에서 2012년 2억 500만 달러까지 매년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 NSLA)에 참여하는 학교와 기관에서 소비하는 신선 채소와 과일 구입 비용을 매년 5,000만 달러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신선과일 및 채소 무료 급식 시범사업인 신선과일채소계획(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에 필요한 예산도 매년 증액하였다. 2008년 4,000만 달러, 2009년 6,500만 달러, 2010년 1억 100만 달러, 2011년 1억 5,000만 달러,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매년 7월에 생활비 상승을 감안하여 증액 폭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저소득 고령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농민시장영양계획(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예산도 2008년 이후 매년 2,060만 달러로 증액하였으며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판

매세 부과를 금지하였다. 또한 소아영양계획(Child Nutrition Program)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 등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산물을 예산이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4. 에너지(Energy)

‘2008년 농업법’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과거 어느 농업 법보다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정부 예산 약 6억 6,000만 달러와 CCC 기금 10억 3,000만 달러 등을 투입하고 있다.

먼저 종전의 연방바이오에너지 구매계획을 바이오시장계획(Biobased Markets Program)으로 변경하고 연방정부 기관의 바이오 관련 제품 구매를 위한 중간 성분 및 공급재료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미국농무부 인증바이오관련제품’ 표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까지 바이오에너지 제품 검사와 표시를 위한 예산으로 연간 200만 달러씩을 배정하였다.

바이오정제지원(Biorefinery Assistance) 정책에서는 전사용 규모의 고급 바이오연료정제 시설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grants), 융자보증(loop guarantees) 제도를 도입하였다. 장려금은 전체 생산비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융자보증은 2억 5000만 달러 이내로 전체 생산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융자보증을 위한 상품무역공사(CCC) 기금을 2009년 7,500만 달러, 2010년 2억 45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2009~2012년 기간의 정부 예산은 1억 5,000만 달러이다.

기존의 화석연료용 발전시설을 바이오에너지용 시설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Retrofitting Assistance)에 CCC 기금 3,500만 달러 외에 정부 예산을 연간 1,500만 달러씩 4년간 신규 배정하였다. 또한 미국농촌에너지계획(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에서 농민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CCC 기금 2억 5,500만 달러와 정부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바이오매스연구개발(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은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추진하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CCC 기금을 1억 1,60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 예산은 매년 3,500만 달러씩 배정하였다. 또한 농촌에너지자급계획(Rural Energy Self Sufficiency Initiative)을 신설하고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매년 500만 달러씩 4년간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 밖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 신축성 계획의 일환으로 농무부 장관은 품목 보조를 받는 설탕의 재고 감축이 필요한 경우 정부 구매 물량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이오매스작물지원계획(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CAP)을 신설하고 농지 또는 임야 소유자가 바이오매스를 수집, 수확, 저장 및 생산시설까지 운반하는 비용으로 2년간 바이오매스 톤당 45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단년 혹은 영년생 작물의 경우 5년까지, 그리고 목재류일 경우 15년까지이다. 또한 농무부 산림국이 관할하는 에너지용 임산부산물(Forest Biomass for Energy) 정책을 새로 시행하였다. 중점 사업은 에너지생산용 저가 임산부산물 활용 기술과 에너지 생산공정 개발 및 새로운 운송연료 개발 등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3.5. 기타

‘2008년 농업법’은 무역(Trade) 정책 분야에서 2007년까지 시한을 연장했던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와 공급자신용보증계획(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및 수출강화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 해외시장 개발계획을 유지, 확대하는 한편 국제 식량원조 예산을 증액시켰다. 또한 국제 비상식량지원에 필요한 지역 구매와 배분 관련 소규모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으며 ‘교육 및 소아영양 개선을 위한 국제식품계획’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농가 신용(Credit) 분야에서는 보존융자제도를 신설하여 환경보존 정책

과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신규 및 사회적 조건 불리 농축산인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대출자들의 용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긴급융자 대상에 말 사육 농가도 포함시켰다. 농가신용제도(Farm Credit System) 회원에 대한 재정적 의무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농촌의 전기 및 전화 시설융자(Rural Utility Loans)를 연방농업담보공사(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oration; Farmer Mac)의 융자 대상(qualified loans)으로 편입시켰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과 경제발전 사업을 기획, 조정, 시행하는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재생가능 에너지와 지역특산 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농업 활동을 강화하였다. 용수 공급과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지원하고 난청 지역의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지역간 공동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 자격이 되는 농촌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다.

연구(Research and Related Matters) 개발과 관련하여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e; NIFA)와 연구교육지도청(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Office; REEO)을 신설하고 농무부의 연구 조정 기능을 개혁하였다. 그에 따라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등 관련 기구의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농식품연구단(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을 설립, 2012년까지 7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재원의 60%는 기초분야의 연구에 투입하고 40%는 응용분야에 배정하였으며 중점연구분야(High-Priority Research Areas)를 특작과 유기농 작물, 바이오에너지, 영양, 그리고 꿀벌 등 수분매체(Pollinator)에 대한 연구로 조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기금은 경쟁을 통해 배정하도록 개혁하였다.

산림(Forestry) 분야에서는 연방정부 소유림과 주정부 소유림, 사유림에 관한 새로운 우선순위와 기획 표준을 설정하여 협동관리 체계를 조정하였다. 기존 산림보호제도를 확충하고 불법 벌목된 목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환경보존 정책과 연계하여 비상산림보존유보계획(Emergency Forestry 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을 신설함으로써 사

유럽 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원예산업과 유기농업(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분야에서는 특작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 특작경쟁력법’의 ‘특작단지기금계획(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소요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기경보 등 다양한 식물 병해충과 질병 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신선농산물과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민시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과채류 시장의 뉴스 보고를 확대하였다. 유기농 제품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농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보존사업과 유기농법의 연계를 장려하며 유기농업 관련 자료 수집 확대 등의 연구를 강화하였다.

축산(Livestock) 분야는 전자식 가축의무보고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원산국 표시(Country-of-Origin Labeling) 대상 품목에 닭고기와 염소고기를 추가하였다. 양돈 및 가금류 생산 농가와 도축장 간 계약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육류 생산시설의 식품 안전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업원 25인 이하의 주검역시설(State-inspected plants)에서 검역된 육류와 가금육의 주간 거래(interstate commerce)를 허용하였다. 그 밖에 연방육류검역법(FMIA)과 가금육생산검역법(PPIA)를 개정하여 불량품이나 가짜 상표 육류가 시중에 유통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였다.

작물보험(Crop Insurance)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조금을 감축하였으며 농민이 지불하는 최소부보 수준 관리수수료를 인상하였다. 재해지원제도보장(Disaster Assistance Program Guarantee) 수입과 농가총소득(Total Farm Revenue) 간 차액의 60%를 지불하는 추가수입지원지불(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Payments; SURE)을 도입하였다. 또한 축산물과 사료작물, 나무와 육묘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 및 조세조항(Trade and Tax Provisions) 분야에서는 농업재해추가지원(Supplemental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SADA)에 필요한 기금 조달을 위해 농업재해구조기금(Agricultural Disaster Rescue Fund; ADRF)을 창설하였다. 또한 세관수수료, 보존정책과 품목별 정책에 소요되는 재

원, 목재 투자, 바이오연료 생산, 그리고 농업소득 등에 관련된 수많은 조세 규정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회 예산실(CBO)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출이 약 3,0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분야별로는 식품구입권 등 영양정책에 2,090억 달러, 품목별 정책 350억 달러, 환경보존 정책 250억 달러, 기타 380억 달러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0억 달러, 2009년 630억 달러, 2010년 628억 달러, 2011년 637억 달러, 그리고 2012년 614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4. 미국 ‘2008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4.1. ‘2008년 농업법’에 대한 평가와 특징

미국의 ‘2008년 농업법’에 대한 평가는 행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의회의 긍정적인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⁶ 먼저 행정부는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기록적으로 높아 농가소득이 급증한 현 시기에 보조금 수혜 농가 자격을 완화하고 보조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국 내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⁷ 농업개혁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잃어, 향후 농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한 보조를 줄 수 있는 농업법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존 정책이 후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환경보존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40억 달러나 줄었고, 그로 인해 습지보전계획

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 Congress. May 13, 2008(www.cbo.gov)

6 케언즈 그룹을 대표하는 호주는 이번 농업법의 미 의회 통과에 대해 “농가보조를 증대시키는 중대한 뒷걸음질”이라고 혹평하였으며 G-20의 대변인 격인 브라질은 “미국의 농업법이 농업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음(Washington Trade Daily, Volume 17, Number 112, June 4, 2008).

7 “Fact Sheet: Congress’ Farm Bill is Bad for American Taxpayers.”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y 9, 2008(<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5/20080509.html>)

대상 면적이 정부 목표치보다 매년 25만 에이커나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 의회는 이번 농업법이 미국의 식품 및 농업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농업법’으로 식품 및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식품 안보가 확대되고 중요 천연자원 보호를 강화하며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농산물과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개혁하였다는 것이다.⁸ 우선 보조금 수혜자격 소득 기준을 개편하여 농가의 소득안전망(safety net)을 확대하였으며, 3-경영체 규정(3-entity rule)을 철폐하여 보조금 수혜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영양정책 예산이 증가되고 유기농,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지원을 새로 시작하였으며, 육류 등에 대한 원산지 국가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성을 제고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옥수수예탄을 세금 감면과 바이오에너지 연구 등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이 촉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부의 비판과는 반대로 보존정책 예산을 79억 달러 증액하고 농지의 도시 개발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을 배가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을 강화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양측의 평가가 상반되지만 각각의 견해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 않다. 다만 평가 기준을 기존 정책에 두는지 의회에 제시했던 행정부의 법안에 두는지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이 줄어든 부분만 강조하고 늘어난 분야는 무시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2008년 농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지난 20여년간의 농업법과 달리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인 농정개혁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변동대응직불(CCP) 대상

8 “Fact Sheet: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House Agriculture Committee. May 13, 2008.

품목을 확대하고 밀, 보리, 콩 등의 목표가격을 인상하였으며 사실상 최저가적인 용자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과일, 채소, 유기농산물 등 과거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품목에까지 보조를 확대하고 설탕과 낙농품 등 기존 특별보호 품목에 대한 지원은 더욱 증가시켰다.

둘째,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다⁹. 향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확이 줄어 농가수입이 감소할 경우 정부의 직접지불금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항구적 재해보험인 보조농업 재해지원(SADA)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재해는 물론 기후 불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흉작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환경보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보존유보계획(CRP) 대상 면적은 줄었지만 습지보존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CRP 대상 토지에 방풍림이나 야생동물 통로 개설을 위해 나무를 간벌할 경우 비용분담금(cost-share payments)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개선장려정책(EQIP)을 강화하여 경작 중인 농지 보전을 위한 재원이 늘어났으며 보존관리계획(CSP)에 따라 토지와 물, 야생동물 등 자원 보존 경영 방식을 채택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 미국 농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영양(Nutrition) 정책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 공제한도를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육류 원산국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육아비 부담 가구에 대한 지원액 상한을 철폐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긴급식품지원계획(TEFAP)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 등에 신선 채소와 과일 공급 무료 지원도 확대하였다. 그 밖에 고령농민에 대한 영양 지원과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 지원도 확대하였다.

9 미 농무부는 2008년 상업농 평균 소득을 229,920 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Economic.com “A harvest of disgrace” Mar. 22nd 2008.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다섯째, 이번 농업법은 최근의 유가 상승을 고려하여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바이오에너지 제품 검사와 표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바이오정제 시설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옥수수 등 곡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바이오매스 연구 개발과 바이오작물 지원 계획을 도입하고 농지나 임야 소유자의 바이오매스 수집, 저장,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4.2.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오랜 기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은 우리나라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을 확정하는 체계가 법제화되어 있고, 외견상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질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법으로 제정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농업법’은 입법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현실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하는 국내 계층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2008년 농업법’ 일부 조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인 조항 삽입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의 두 번째 시사점은 입법 과정에서 개별 정책들이 단발성으로 시행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되어 실시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불제와 환경보존 조치의 준수 의무를 연계하였으며, 보존과 유기농 지원, 소득 안정과 보험, 바이오매스와 산림, 영양과 원예산업 육성,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잉여 설탕 처리를 적절히 연결시킴으로써 개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을 개편하면서 바이오에너지 연구와 보존 분야의 연구 개발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이번 농업법을 통해 최근의 국제 석유가격 급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과 바이오매스작물 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 증대, 그리고 화석연료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대체 자금 지원 등이다. 또한 농촌의 에너지 자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인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사용, 산림부산물 등 바이오매스작물 이용 효율화 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농업법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개방 진전에 따라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검역 및 검사체계 구축을 촉진하였다.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생산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과 생산자 및 식품 성분 등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였다.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표시(country-of-origin labeling) 확대 조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열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참고 문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 Congress. May 13, 2008. <www.cbo.gov>.
- Economic.com. "A harvest of disgrace." Mar. 22 2008. The Economist (print edition).
- Government Press Offic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
- House Agriculture Committee. *Fact Sheet*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May 13, 2008.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Fact Sheet* "Congress' Farm Bill is Bad for American Taxpayers." May 9, 2008.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5/20080509.html>>.
- Sumner, D. A., "Economics of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the Farm Bill" KREI. 6th KREI Seminar, July 2, 2008.
- USDA ERS. 2008 *Farm Bill Side-by-Side*. <<http://www.ers.usda.gov/FarmBill/>>.

USDA ERS. *Briefing Rooms* “Farm and Commodity Policy: Basics of U.S. Agricultural Policy,” March 17, 2008.

Washington Trade Daily. Volume 17, Number 112, June 4, 2008.

농협경제연구소. “2008년 미국 농업법과 농업보조금 정책.” CEO Focus 제196호. 2008. 6.30.

최정섭 외. 2002. “미국의 2002 농업법.” 『농촌경제』. 제25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송무. “2008 미국 농업법(Farm Bill) 주요 내용.” 농림식품부 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 2008. 9. 12.